

[별첨 1: 제4호 이미지] 본 광고신청과도 판주는 유관함을 통해 구분되어 있습니다.



변경내용

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2024년 10월
신청인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24년 10월 1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4-P1-11-6	
	기타		

※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폰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광고 이미지			
기타		면 번호	2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24년 10월 1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
	심의번호	24-P1-11-6	
	기타		



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- 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합니다.
단, 방송 및 패키지, 기타 포장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.
-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-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